

제 16 장 정부조달

제 16.1 조 총 칙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정부조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양자 간 무역기회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데 대한 당사국의 관심을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의 맥락에서 정부조달시장의 국제적 자유화를 증진하는데 대한 당사국의 공통된 관심을 인식한다.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 제24조제7항에 따른 검토와 APEC 및 그 밖의 적절한 국제 포럼에서 조달 사안에 관하여 협력을 지속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정부조달협정상의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 및 이 장의 범위 밖의 자국의 모든 정부조달에 대하여 APEC의 정부조달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적절히 적용하려는 당사국의 희망과 결의를 확인한다.

제 16.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에 명시된 대로, 이 장이 적용되는 조달 기관에 의한 조달에 관한 법률·규정·절차 또는 관행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 정부조달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에 명시된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

나. 부속서 16A의 부록 16A.2에 명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상품과 서비스의 결합의 구매, 또는 구입선택을 포함하거나 하지 않은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와 같은 방법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조달, 그리고

다. 계약이 부속서 16A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조달

3. 부속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협력적 합의,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보증, 재정적 유인, 그리고 이 장에 대한 양허표에 특정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인 또는 정부당국에 대한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포함하여, 비계약적 합의 또는 정부지원의 어떠한 형태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정부조달협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은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인 대우 및 시장접근)·제9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제10장(투자)·제11장(통신), 제12장(금융서비스)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6.3 조

정부조달협정 규정의 준용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내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0조, 제23조, 협정의 주석 및 부록 2 내지 4를 모든 적용대상 정부조달에 적용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정부조달협정의 동 조항 및 주석 및 부록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일부가 되고 이에 준용된다.

2. 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협정의 준용 목적상,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가. 정부조달협정에서의 “협정”이라 함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비당사국”을 의미하는 것과 정부조달협정 제3조제2항나호에서의 “이 협정의 당사자”가 “당사국”을 의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을 말한다.

나. 정부조달협정에서의 “부록 1”이라 함은 “부속서 16A”를 말한다.

다. 정부조달협정에서의 “부록 2”라 함은 “부속서 16B”를 말한다.

라. 정부조달협정에서의 “부속서 1”이라 함은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의 양허표 1”을 말한다.

마. 정부조달협정에서의 “부속서 2”라 함은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의 양허표 2”를 말한다.

바. 정부조달협정에서의 “부속서 3”이라 함은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의 양허표 3”을 말한다.

사. 정부조달협정에서의 “부속서 4”이라 함은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의 양허표 2”를 말한다.

- 아. 정부조달협정에서의 “부속서 5”라 함은 “부속서 16A의 부록 16A.1의 양허표 3”을 말한다.
- 자. 정부조달협정 제3조 제1항 나호에서의 “그 밖의 모든 당사자”라 함은 “비당사국”을 말한다.
- 차. 정부조달협정 제4조제1항에서의 “다른 당사자로부터”라 함은 “타방 당사국으로부터”를 말한다.
- 카. 정부조달협정 제8조에서의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 간 또는”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타. 정부조달협정에서의 “상품”이라 함은 “상품”을 말한다.

3. 부속서 16A에 명시된 조달기관이, 이 장에 따라 적용되는 조달의 맥락에서, 부속서 16A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업이 특정 요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부조달협정 제3조가 그러한 요건에 준용된다.

4. 정부조달협정이 개정되거나 다른 협정에 의하여 대체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 후 이 장을 적절하게 개정한다.

제 16.4 조 공급자 자격심사

입찰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은 당해계약을 이행할 기업의 능력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된다. 재정보증, 기술적 자격요건,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기술적 능력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입찰참가조건을 국내공급자보다 다른 당사자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다른 당사자 공급자 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공급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적·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은 공급조직 간의 법적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조달기관이 속한 영역에서의 사업활동뿐만 아니라 그 공급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 세계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제 16.5 조 정보기술 및 협력

1. 양 당사국은, 투명성 및 비차별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특히 조달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입찰기회에 관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파되도록 전자적 통신수단을 사용하도록 가능한 한도 내에서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이 제16.3조제1항에 의하여 이 장에 통합된 정부조달협정 제9조에 따라 계약에 대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관심있는 공급자를 초청하는 공고를 공표할 경우, 각 당사국은 부속서 16B에 명시된 단일창구를 사용한다.

3.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정부전자조달체계의 개발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기술 협력 및 지원을 상대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정부조달협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조달기관은 세계무역기구의 공식언어, 즉 영어·불어 및 스페인어 중 하나로 요약공고를 공표한다. 이 장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영어를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를 공표하는 언어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동 공고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계약의 대상

나. 입찰서 또는 입찰초청신청서 제출을 위하여 정하여진 시한, 그리고

다. 계약에 관련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소 및 접촉선

제 16.6 조 조달계획의 공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그 기관의 조달계획에 관한 정보를 전자조달창구를 통하여 회계연도 내에 가급적 조속히 공표하도록 권장한다.

제 16.7 조 적용범위의 수정

1. 당사국이 부속서 16A의 자국의 부록에 경미한 개정·정정 또는 그 밖의 순수하게 형식적이거나 사소한 성격의 수정을 하고자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개정·정정 또는 수정은 통보

한 날부터 30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타방 당사국은 보상적 조정조치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의 조달기관 또는 그 일부의 사업적 또는 상업적 운영이나 기능이, 그 당사국의 정부가 그러한 법인에 대하여 지분 또는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법인격을 가지는 기업으로 구성되거나 설립되어 있을 때, 그 당사국이 부속서 16A의 자국의 부록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기관의 삭제 및 수정 제안은 통보한 날부터 30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타방 당사국은 보상적 조정조치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의 사유로 수정을 하고자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수정 전에 존재하던 것에 상응하는 적용대상 수준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보상 조정조치를 제공한다. 수정 제안은 통보한 날부터 30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6.8 조

투명성

양 당사국은 자국의 정부 조달기관이 잠재적 공급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도록 모든 조달 법률·규정·절차 및 관행을 일관성 있고 공정하며 공평하게 적용한다.

제 16.9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 간의 모든 의사소통 또는 통보는 접촉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이 조의 목적상, 양 당사국의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재무부 또는 그 승계기관